

2 행정 수속

(1) 외국인 등록

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, 새로이 일본에 입국하여 90 일 이상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,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인,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외국인 등록법에 의거하여 「외국인 등록 신청」을 입국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, 출생이나 일본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상실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시청의 시민과 외국인계에서 하셔야만 합니다. 그리고 등록을 하고 건네받은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외출할 때 항상 휴대해 주십시오.

◎신고에 필요한 것

- 여권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매 (4.5 × 3.5cm, 얼굴 크기 2.8cm ± 3cm) 단, 16세 미만인 경우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.
- 출생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접수증명서

◎재교부

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14 일 이내에 재교부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. 재교부에는 여권과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. 분실하였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신속히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신고를 내 주십시오.

◎교체

외국인등록증명에 기재된 다음 번 확인(교체)신청기간(기준일로부터 30 일 이내)에 교체해야 합니다.

- 신고에 필요한 것……외국인등록증명서, 여권, 사진 2매

◎변경 등록

주소, 이름, 근무처, 재류자격, 재류기간 등이 바뀌었을 때에는 변경으로부터 14 일 이내에 수속을 해 주십시오.

- 신고에 필요한 것……외국인등록증명서, 여권 등
- 시청시민생활부 시민과 외국인계
- 전화 237-1161 내선 3314



(2) 전입 · 전출 · 이사

①전입신고

일본 국내의 다른 시읍면으로부터 코후시로 주소를 옮겼을 때에는 14 일 이내에 시민과 외국인계에서 변경 수속을 끝마쳐 주십시오.

◎신고에 필요한 것……외국인등록증명서

②이사신고

코후시 내에서 주소를 옮겼을 때에는 14 일 이내에 변경 수속을 시민과 외국인계에서 끝마쳐 주십시오.

◎신고에 필요한 것

- 외국인등록증명서
-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증
-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수첩

③전출신고

코후시로부터 다른 시읍면으로 주소를 옮길 때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전출하는 곳의 시읍면 동사무소에 제출하고, 변경 수속을 해 주십시오.

이 경우, 코후시에서는 다음의 수속을 끝마쳐 주십시오.

- 국민건강보험증, 육아건강(すこやか子育て)의료비수급자격증, 노인의료수급자격증, 인감등록증 등의 반환
- 연금, 아동수당 등의 변경
- 세금, 시영주택, 수도요금 등의 정산

(3) 혼인신고 · 출생신고 · 사망신고

①혼인신고

◎신고에 필요한 것

●외국인끼리의 경우

- 혼인신고 (시민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)
- 출생증명서 (번역한 사람을 명시한 일본어 번역문 첨부)
- 본국 관헌 발행의 국적증명서 (또는 여권)
- 대사관에서 발행된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(번역한 사람을 명시한 일본어 번역문 첨부)
- 국민건강보험증과 국민연금수첩 (가입자)

●외국인과 일본인의 경우

○외국인

- 출생증명서 (번역한 사람을 명시한 일본어 번역문 첨부)
- 본국 관헌 발행의 국적증명서 (또는 여권)
- 대사관에서 발행된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(번역한 사람을 명시한 일본어 번역문 첨부)